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 도 자 료**	(배포) 2021. 8. 20.(금)

8월 20일(금) 16:00 이후 사용

비고	* 공동배포 : 산업통상자원부, 특허청	
담당	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실	과장 천세봉, 사무관 양동혁 (044-200-2517, 2524)
	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	과장 이정은, 사무관 김용수 (044-203-2751, 2748)
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	과장 김용섭, 사무관 차혜란 (044-203-2411, 2425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	과장 이종석, 사무관 김성건 (044-203-4540, 4543)
	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	과장 이옥형, 사무관 윤성웅 (044-204-7700, 7703)
	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	과장 김준경, 사무관 문은정 (042-481-5258, 5807)

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 '기술 · 지식재산(IP) 가치평가'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

▸ **(가치평가 기반마련)** 「발명진흥법」·「기술이전법」 개정을 통해 **기술·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**

▸ **(기술·산업재산권)** 실적이 미흡한 **평가기관에 대해 점검·관리를 강화**하고, **가치평가 분야 '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'을 제정**

▸ **(콘텐츠·미술품)** 음악, 콘서트 등으로 **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**하고, 미술품 관련 **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**

▸ **(부처간 협업체계)** 부처별로 산재된 '**가치평가 DB**' **상호연계 추진**

□ 정부는 **관계부처 합동**으로 **「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·지식재산(IP)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」**을 마련하여 **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**(공동위원장: 국무총리, 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)**에 보고·확정**했다고 밝혔습니다.

*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·확인

□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**기술·지식재산(IP) 이전·거래 활성화**를 위해서는 **'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'**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.

○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·노하우 등 **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***하고 있으며, 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**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**하기 위해선 **기술이전·거래의 활성화가 필요**하나,

* S&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 : 17%('75) → 68%('95) → 84%('15) → 90%('20) (Ocean Tomo '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', 2020)

○ 기술·IP 이전·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**'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' 정착 미흡**으로, **기술이전·거래는 정체***되는 상황입니다.

*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추이 : 12,357건('16)→12,503건('17)→11,002건('18)→11,676건('19)
기술이전율(기술이전 건수/신규확보기술 건수) : 38%('16)→37.9%('17)→34.3%('18)→35.9%('19)

□ **국무조정실 주관**으로 산업통상자원부, 문화체육관광부,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**「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·지식재산(IP)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」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**(가치평가 기반마련)** 기술·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하여 **기술·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** 하겠습니다.

○ 기술·IP 가치평가 제도는 **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**해왔으나, **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 기반의 불명확성***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.

* 「발명진흥법」에는 가치평가 근거, 현물출자 증명(상법 제299조의2) 특례 등이 부족하며, 「감정평가법」에선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

⇒ **'기술·IP 가치평가'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**으로, **「발명진흥법」·「기술이전법」 개정을 추진**하겠습니다.

② **(기술·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)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**과 다수 기관에서 **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**를 통해 **기술·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**하겠습니다.

○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**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**하며, 관련 민간자격은 **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* 만을 요구**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.

* 다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는 7일 내외의 교육훈련·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

⇒ **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**을 위하여, **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**에 대한 **점검 및 관리를 강화**하고,

⇒ **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**을 지원하기 위하여 **'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'*을 제정**하겠습니다.

* (대상/세부내용) 기술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 운영기관 / 자격제도 운영 현황 보고의무, 교육훈련 정보제공 의무, 시험과목 구성기준 등 적시

③ **(콘텐츠·미술품 가치평가 역량 강화)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,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**하기 위하여, **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**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콘텐츠 **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**(콘텐츠가치평가센터)되어 있으며, 미술품 감정·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⇒ 이에, 음악, 콘서트 등 **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***와 **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·추진**하는 한편,

* (기존) 영화, 게임, 뮤지컬 등 6개 분야 → (개선) 음악, 콘서트 등으로 확대

⇒ 미술품 감정에 관한 **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·개발 활성화**와 **감정·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**하겠습니다.

④ **(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)** 불필요한 **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**하고 **평가결과 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**를 위하여 **관계부처**(평가기관) **간 협업체계를 구축·강화**하겠습니다.

○ **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**함에도, 자금조달, 공공조달 등에서는 **특정 기관의 평가결과 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**하며, **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**하여 **평가결과 축적·활용이 저조한 상황**입니다.

⇒ **평가기관 간 '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' 조성을 추진**하며, 부처별로 산재된 **'가치평가 DB' 상호 연계를** 추진하겠습니다.
△ 기관별 **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 발굴·공유** △ 기관간 **가치평가 노하우 공유**

□ 국무조정실에서는 **「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·지식재산**(IP) **가치평가 활성화 방안」**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, 개선방안에 대한 **부처별 세부 추진상황**을 **반기별로 점검**하고 **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**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.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분	현행	개선
① **법적기반 마련**	• 기술·IP 가치평가 전문가의 **불명확한 법적지위**	• '기술·IP 가치평가' **법적근거 명확화**를 위하여 **「발명진흥법」·「기술이전법」 개정**(산업부·특허청, ~'21년下)
② **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**	• **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**으로 **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**	• **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·관리 강화**(산업부·특허청 등, 즉시) • **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**(산업부, ~'21년下)
③ **콘텐츠·미술품 평가역량 강화**	•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**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** • **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**	• **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**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(문체부, ~'22년上) • **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**(문체부, ~'22년 上)
④ **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**	• 부처별로 **가치평가 DB가 산재**되어 **평가결과 축적·활용 저조**	• **관련부처 간 '가치평가 DB' 상호연계 추진**(특허청 주관, ~'21년下)